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 연구

- 경기도 권역을 중심으로 -

성현찬* · 신지영**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Strategies to Improve Parks' Accessibility in City - Focus on Gyeonggi-do Region -

Sung, Hyun-Chan* · Shin, Ji-Young**

*Senior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rangement of parks, in whole city level by using park's effective distance and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case of using parks, in boundary of each parks' effective distance, so that to show how to improve communities' usage of city parks.

The 8 cities in Gyeonggi-do and analysed the effective distance of parks. To find the accessibility obstacles in the boundary of parks' effective distance, 1) we choose 18 sample parks and extract obstacles - wide road, rail road, river- in interior and verify it by field survey and asking the park user's residents directly.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san city and Goyang city are only satisfied with the minimal city parks size standard, so that the rest 6 cities are lack of quantities which residents can use. The result of analyzing effective distance in whole city level, parks are mainly designated in new-town, so that most cities which have old-towns have very poor park systems to use. Because Ansan city is new-planned city, it is very effective arrangement in park systems exceptionally. Second, 96.2% of park users' are living in the area which was easy to gain access not intercepted by wide road, rail road or river. Third, therefore at the stage of planning park, effective distance and resident's accessibility as well as park's supply quantitatively are needed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selection of location and elevation of resident's safety and accessibility through making a plan must be reflected. In the low accessibility area, the program to improve park's accessibility and amenity - like making small park or pocket park, linking parks with resident-friendly road etc.- has to be investigated.

Key Words: City Park, Park Planning, Park Arrangement, Effective Distance, Urban Openspace

Corresponding author: Shin, Ji-Young,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el.: +82-31-250-3285, E-mail: sjirang@cricmail.net

I. 서론

도시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도시공원과 녹지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실제로 도심에서 자연적인 공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어 (Chiesura, 2004), 도시기반 시설로서의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원을 설치할 때는 1인당 면적, 유치권, 접근성 등의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중 1인당 면적기준과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는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 조성된 도시공원은 도시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위락 활동 공간이고 도시 환경을 높일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질적, 양적 욕구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제 이용자들은 공원과 녹지를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성현찬, 1998; 손상락 등, 2002). 이는 도시공원의 조성 시 질적 기준이나 배분 측면보다는 인구 1인당 면적 기준과 같은 양적 기준이 더 중요한 요소로서 적용되어 왔고 (성현찬, 1998; 안동만 등, 1991) 실제적인 시민의 효율적 이용이나 도시 내에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채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허미선 등, 1996).

도시공원의 이용은 도시공원의 위치와 공원 이용자의 거주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원의 이용과 공급에 있어서는 대규모 공원보다는 작은 규모로 분산 배치함이 효율적이다 (오병태, 1995). 이에 많은 연구들이 접근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박찬규, 1990; 오병태, 1995; 안동만 등, 1991), 이는 전체적인 공원의 배치 파악에는 유용하나 개별 공원 유치권 거리 내에서는 공원 접근 차단 요소를 파악하여 공원 접근을 향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 모든 지역이 공원의 유치권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도로나 하천, 철도 등에 의해 실제적으로 주민의 접근이 불가능한 공원이 존재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으로서의 접근 거리에 따른 배치만으로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는 거리의 개념이 아닌 실제 주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은 소요시간, 직선거리, 이동 난이도 (허미선 등, 1996)나 도로, 철도 등의 물리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성현찬, 1998).

본 연구는 유치권 분석을 통해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의 배치를 분석하고,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 주민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공원의 적절한 배치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규 공원 녹지 조성 공간에 대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의 공급 계획시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도시 시민의 공원으로서의 접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시 전체 차원에서 도시공원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보고 배치가 균등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유치권을 분석하였다. 또한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유치권 내에서 공원으로서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하므로, 개별 공원 유치권 내에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1. 도시공원 유치권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의 분포 파악을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8개 시·군을 선정하여 전체 도시 차원의 공원 시스템 상에서 분석한 후 일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일상권 공원인 근린공원에 대하여 유치권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대상 시·군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경기도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북부와 남부 지역의 시군을 선정하고, 둘째,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인구밀도가 평균과 비교해 낮은 곳과 높은 곳을 고려하였다. 셋째, 도시의 발전 정도에 따라 구도시, 신도시, 도·농통합시, 군지역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계획된

표 1. 선정된 사례대상 도시

사례대상 도시	위치	인구밀도 (인/km ²)	조성공원 비율(%)	도시유형
안양시	경기 북부	10,387(높음)	81.8	구도시
안산시		4,581(높음)	43.8	신도시
평택시		822(낮음)	45.7	도·농통합시
양평군		96(낮음)	12.5	군지역
의정부시	경기 남부	4,867(높음)	73.3	구도시
고양시		3,266(높음)	65.1	신도시
남양주시		882(낮음)	14.3	도·농통합시
가평군		66(낮음)	11.1	군지역

공원 개수에 대비해 조성된 공원의 개수 비율이 높은 시·군을 기준으로 총 8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군은 표 1과 같다.

선정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상권 공원의 유치권을 분석하였는데, 도시계획총괄도와 수치지형도를 바탕으로 도면상에 ArcView 3.2를 사용해 1:30,000 도로지도상에 유치권을 표시하여 분석하였다. 도시공원의 유치권은 도시공원법상의 기준을 바탕으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500m, 도보권 근린공원은 1,000m를 적용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 전체가 유치권에 속하나 각 시·군의 근린공원의 경우 도시공원의 위계설정(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계획구역권, 광역권 등)이 명료하지 않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면적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도시계획 구역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도 최대 주민 접근이 가능한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인 1,000m로 가정하였다.

2. 도시공원의 접근성

도시공원 시스템 상에서公園으로 접근할 때는 가로수 및 녹지로 각公園간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公園으로의 접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일상적으로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교통수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권公園의 성격을 띠는公園인 근린公園만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유치권을 분석한 사례 대상 8개 시·군에서 접근성 분석을 위해 사례대상 도시의公園 중 조성된公園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례 대상公園을 선정하였다. 첫째, 도시공원법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1만 m² 이상~3만 m² 미만은 근린생활권 근린公園, 3만 m² 이상~10만 m² 미만은 도보권 근린公園, 10만 m² 이상의公園은 도시계획 구역권 근린公園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조성 내용을 기준으로 인공형公園과 자연형公園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양평군과 가평군의 경우 조성된公園이 1개소에 불과하여 1개소만을 선택하였으며, 의정부시, 남양주시, 가평군은 조성된 도시계획권 근린公園이 없어(남양주시의 경우 조성된 1개소는 휴유능으로 문화재임) 사례 대상公園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위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公園들 중, 10만 m² 미만의 면적公園은 인공형과 자연형公園의 면적이 유사한公園을 추출하였으며, 10만 m² 이상公園의 경우 실제로 주변에 주거지가 위치하여 근린公園으로 기능하고 있는公園을 선정하였고 이 경우 대부분이 자연형公園이어서 인공형公園은 선정하지 않았다.

선정된 조성公園 18개소의 접근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접근성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철도, 6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을公園에 대한 주민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하고 첫째, 도면분석을 통해公園의 유치권을 표시하고, 둘째 현장조사를 통해 접근성을 차단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셋째, 접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公園 이용자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고 직접 도면상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公園 이용자의 접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해 접근성을 접근을 차단하는 요소로 설정 철도, 6차선 이상의 도로, 하천이 실제로公園 이용자의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인지를 확인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파악된 곳이 실제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인지를 확인하여, 최종적으로公園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의 표본수의 설정방법은 시 전체 모집단의 인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데¹⁾, 이 경우 고양시와 가평군의 표본수가 1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며, 2개 군지역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30부의

표본추출도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각 지역별로 균등 배분 방식을 채택하여 각 지역별 약 100부로 동일하게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중 가평군과 양평군의 경우 1개씩의 공원만 조성되어 있어, 1개의 공원 표본 수의 결과가 전체 결과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문 대상에서 제외하고 6개 도시 16개 공원에 대하여 총 600부의 설문대상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사례 대상 도시별 3개의 공원이 모두 조성된 안양시, 안산시, 평택시, 고양시 등 4개시는 각 공원 당 33부~34부씩 배부하였고, 2개소만 조성된 의정부시, 남양주시 2개시는 각각 55부씩을 배부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04년 10월 18일에서 20일까지 3일간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와의 일대일 직접 대면을 통해 이루어졌다. 접근성 분석을 위해 선정된 사례 대상 공원과 공원에 적용한 유치거리와 설문자 수는 표 2와 같다.

III. 연구결과

1. 사례대상도시 유치권 분석 결과

도시 전체 차원에서의 유치권의 분석은 도시에서 공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서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공원의 면적이 확보된 것을 바탕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상권 공원인 근린공원의 경우 지정된 공원은 대체적으로 법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으나 안양시와 남양주시는 1인당 공원면적이 각각 1.59m²와 2.91m²에 불과해 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조성된 공원의 경우 근린공원만을 볼 때 안산시와 고양시 등 2개 시만이 법적 기준을 넘고 있었으며 나머지 시군의 경우 매우 낮은 공원조성율과 함께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한 공원의 양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대상 시군의 유치권을 그림 1과 같이 사례 대상도시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구가 거주하고 있

표 2. 사례대상공원 및 공원별 적용 유치거리, 설문자수

구분	공원명	근린공원유형			면적(m ²)	유치거리(m)	설문자수(명)	
		공원구분	조성내용	규모 (10만m ² 기준)				
경기 남부	안양시	평촌공원	도보권	인공형	이하	39,499	1,000	34
		운곡공원	도보권	자연형	이하	30,148	1,000	33
		자유공원	도시계획구역권	자연형	이상	169,118	1,000	34
	안산시	외동공원	도보권	인공형	이하	56,895	1,000	33
		반월공원	도보권	자연형	이하	44,732	1,000	33
		샛터공원	도시계획구역권	자연형	이상	136,717	1,000	34
	평택시	현화공원	근린생활권	인공형	이하	20,534	500	33
		농성공원	근린생활권	자연형	이하	29,511	500	33
		신당공원	도시계획구역권	자연형	이상	152,577	1,000	34
양평군	갈산공원	도시계획구역권	자연형	이하	116,480	1,000	-	
경기 북부	고양시	성지공원	도보권	인공형	이하	50,334	1,000	33
		가라산공원	도보권	자연형	이하	55,350	1,000	33
	의정부시	백석공원	도시계획구역권	자연형	이상	157,982	1,000	50
		백석천공원	근린생활권	인공형	이하	12,248	500	51
		금호4호공원	도보권	자연형	이하	88,957	1,000	49
	남양주시	청학공원	근린생활권	인공형	이하	10,071	500	50
		진영공원	도보권	자연형	이하	61,749	1,000	42
	가평군	참전비공원	근린생활권	인공형	이하	3,300	500	-

표 3. 사례대상 도시의 공원현황 및 일상권 공원 부족지역

구 분	지정공원			조성공원			일상권공원 부족지역	
	개소	면적(m ²)	1인당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1인당 면적(m ²)		
안양시	근린공원	11	966,880	1.59	9	808,526	1.34	서북부 구시가지(석수1.2동, 안양1.2,3.동, 박달1.동, 비산1.동 등 일부)
	도시자연공원	3	7,220,651	11.87	0	0	0	
안산시	근린공원	48	4,533,709	6.75	21	2,260,812	3.37	없음
	도시자연공원	6	3,812,334	5.68	2	1,066,545	1.59	
평택시	근린공원	35	2,529,883	6.81	16	443,294	1.19	송탄, 안중, 비전 지역 일부
	도시자연공원	2	2,483,261	6.69	0	0	0	
양평군	근린공원	8	583,090	6.92	1	116,480	1.38	양수리 지역
	도시자연공원	0	0	0	0	0	0	
고양시	근린공원	64	6,122,857	7.01	43	3,102,891	3.55	동부 구시가지(고양동, 원신동, 흥도동, 창릉동, 화전동, 능곡동, 행주동, 대덕동 일부)
	도시자연공원	6	24,325,091	27.86	0	0	0	
남양주시	근린공원	23	1,177,909	2.91	2	71,749	0.18	남서부 도시계획구역(진접읍, 발내면, 진건읍, 지금동, 양정읍 일부)
	도시자연공원	2	1,952,300	4.81	1	1,172,000	2.89	
의정부시	근린공원	15	2,459,102	6.21	11	239,002	0.60	남부, 동부 구시가지(송산1.동, 호원1.동, 장암동 일부)
	도시자연공원	1	376,000	0.95	0	0	0	
가평군	근린공원	9	503,110	9.08	1	3,300	0.06	남부 외서면
	도시자연공원	2	378,800	6.84	0	0	0	

는 지역을 적절하게 유치권 내에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공원 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의 신시가지 지역, 신도시의 경우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 공원의 유치권이 도심지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택지 개발지구 혹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이나 읍의 경우 공원의 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나, 택지 개발지구 등이 없는 구시가지 지역과 면단위의 지역에서는 공원 유치권이 포괄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지정된 공원이 없어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대상 시군의 공원 공급량과 일상권 공원의 부족지역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유치권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 사례대상 공원의 접근성 분석 결과

개별공원의 유치권 내에서의 접근성 분석은 공원으로의 접근을 실제로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 요소들이 실제적으로 접근성 방해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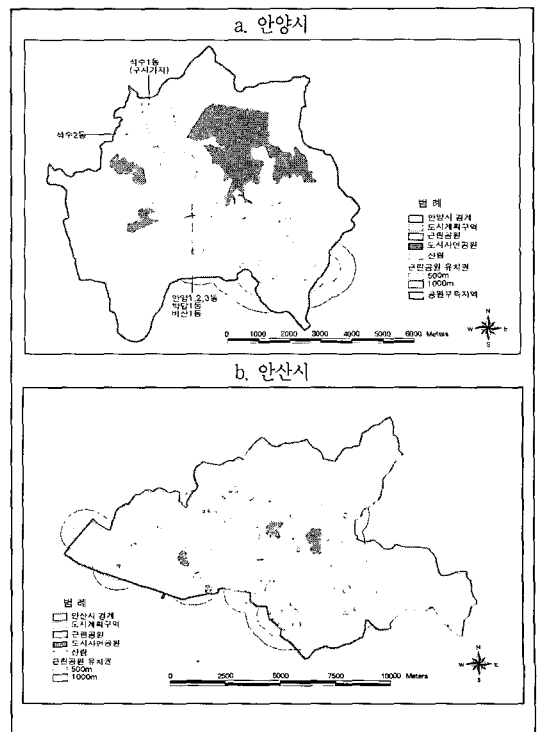


그림 1. 사례대상 도시별 유치권 분석도³⁾

주민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6차선 이상의 도로²⁾와 철도, 하천을 설정하고 공원의 유치권 내에서 이들에 의한 공원접근 불량지역을 표시하였는데, 사례대상 공원에서는 7개 공원이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유치권 내에 관통하고 있었으며, 철도의 경우 6개소, 하천의 경우 10개소의 공원이 유치권 내에 공원으로의 접근성 장애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사례대상 공원에서 접근성 저해요소와 공원의 접근성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접근성 장애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접근성 장애요소가 실제로 공원이용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제 공원 이용자들의 거주지를 일 대 일 설문을 통해 도면에 표시하여 파악한 결과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중 약 96.2%의 이용자들이 유치권 내에서도 도로나 하천, 철도 등의 접근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치권 내에 있으나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곳에 거주하는 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8%로 거의 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는 6차선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이 실제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표 4. 사례대상 공원의 접근성

공원명	접근성 장애요소		
	도로	철도	하천
안양 평촌공원	57번 지방도	-	학의천
안양 운곡공원	57번 지방도	-	학의천
안양 자유공원	47번, 1번 국도	-	-
안산 와동공원	-	-	안산천
안산 반월공원	-	-	-
안산 샛터공원	-	-	안산천
평택 현화공원	-	-	-
평택 농성공원	-	-	-
평택 신당공원	-	-	-
고양 성저공원	-	경의선	-
고양 가라산공원	일반도로	-	-
고양 백석공원	-	경의선	-
의정부 백석천공원	-	경의선	백석천
의정부 금오4공원	43번 국도	-	부용천, 중랑천
남양주 청학공원	-	-	용담천
남양주 진영공원	-	경춘선	묵현천
계	7개소	6개소	10개소

표 5. 공원별 설문 응답수 및 응답자 거주지역

공원명	실제 응답한 공원이용자의 거주지역						
	총 응답수	유치권 내		유치권 외		유치권내 접근성 양호한 곳 거주자 이용비율(%)	유치권내 접근성 불량지 거주자 이용비율(%)
		접근성 양호	접근성 불량	해당시·군 내	해당시·군 외		
안양 평촌공원	34	27	0	6	1	100.00	0.00
안양 운곡공원	33	24	1	5(5)	3	96.00	4.00
안양 자유공원	34	30	1	1(1)	2	96.77	3.23
안산 와동공원	33	18	9	4(2)	2	66.67	33.33
안산 반월공원	33	32	0	1(1)	0	100.00	0.00
안산 샛터공원	34	33	0	1	0	100.00	0.00
평택 현화공원	33	19	0	14	0	100.00	0.00
평택 농성공원	33	28	0	2	3	100.00	0.00
평택 신당공원	34	34	0	0	0	100.00	0.00
고양 성저공원	33	26	0	6(4)	1	100.00	0.00
고양 가라산공원	33	33	0	0	0	100.00	0.00
고양 백석공원	50	43	0	7	0	100.00	0.00
의정부 백석천공원	51	28	0	20(2)	3	100.00	0.00
의정부 금오4공원	49	34	7	8	0	82.93	17.07
남양주 청학공원	50	36	0	7(1)	7	100.00	0.00
남양주 진영공원	42	39	1	2	0	97.50	2.50
계	609	484	19	64	22	96.22	3.78

주: 괄호 안의 수는 응답자가 유치권 외 지역에서도 다른 동지역에 사는 경우의 응답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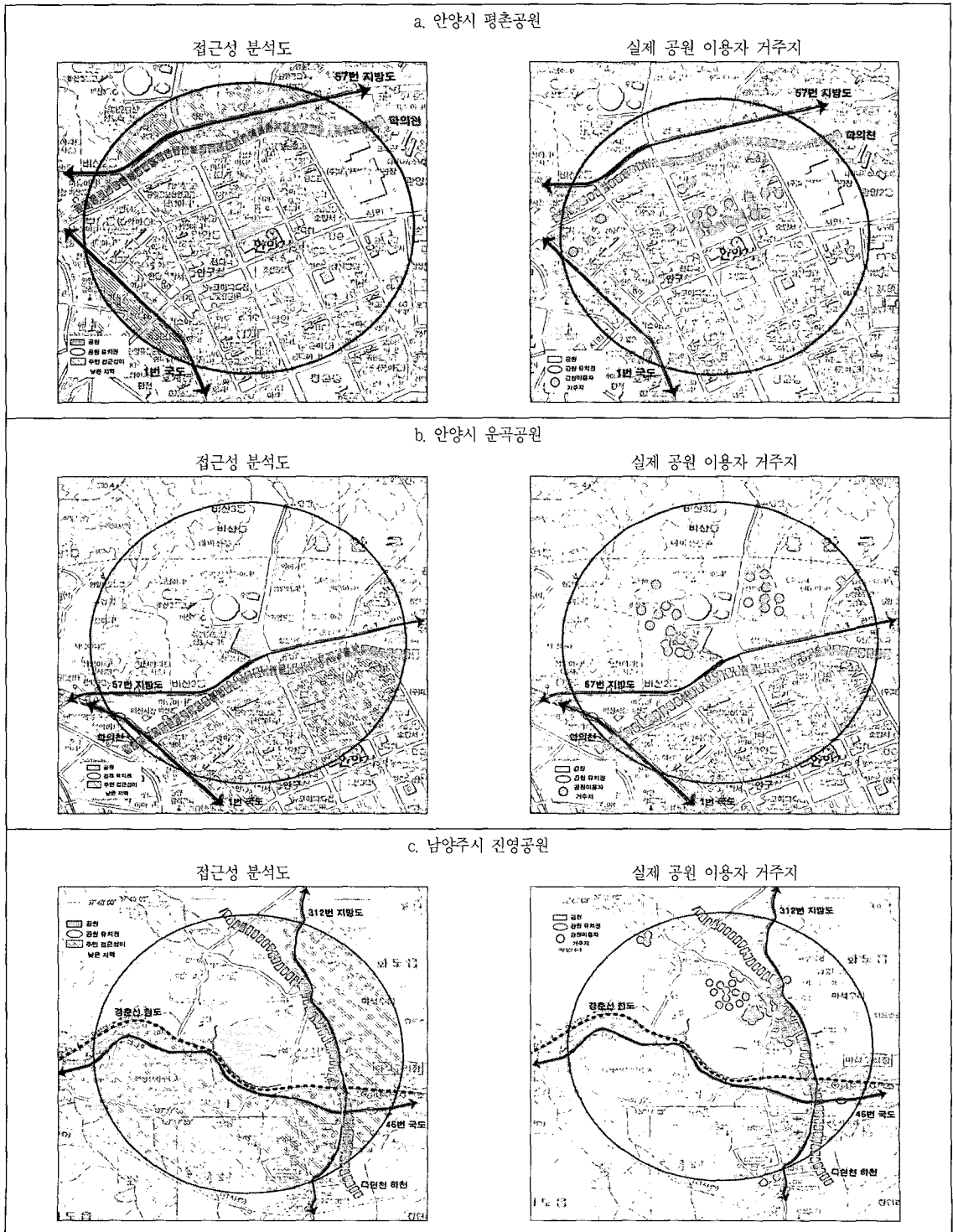


그림 2. 사례대상 공원 접근성 분석 및 실제 파악된 공원이용자의 거주지역 표시도⁴⁾

나타내며, 이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의 공원 유치권은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산시 와동공원과 의정부시 금오4호 공원을 제외한 14개 공원의 경우 공원 이용자의 95% 이상이 유치권내에서 공원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거주하면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와동공원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파악된 지역에서의 공원으로 접근한 이용자가 33.3%로 비교적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안산천이 접근 제약요소 이긴 하나 안산천 곳곳에 다리가 놓여있어 공원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내 8개 시·군, 16개 공원을 사례로 유치권 분석을 통해 전체 도시 차원에서 공원의 배치와 개별 공원의 유치권 내에서 접근성 방해 요소를 분석하여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정된 공원 유치권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에서 신시가지 중심으로 공원이 지정되고 조성되고 있어, 구시가지의 경우 조성되는 공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부족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되는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의 지정 후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원의 유치권 분석을 통하여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배분이 가능하도록 공원의 조성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성된 공원의 접근성 분석 결과 유치권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원으로의 접근을 방해하는 도로, 철도, 하천 등이 있는 경우 장애요소에 의해 차단된 곳에서는 주민들의 공원으로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공원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미 조성된 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용 주민과 공원 사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원 내부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한 구름다리(육교)등을 설치, 공원 주변 도

로에서의 차량 속도 제한, 주변 보도와의 연결성 확보, 공원과 주변 녹지를 연결하면서 보행자 도로와 연결시켜 공원 이용자의 안전한 접근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 공원의 계획 시 공원 유치권 내에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공원을 조성하거나 접근성 불량지역에 별도로 신규 공원을 계획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새로 개정되는 도시공원법상의 분류에 의한 소공원 등이 대안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공원계획에서는 공원의 양적인 공급 측면뿐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 차원에서의 배치, 개별 공원에서의 접근성 방해요소의 파악을 통한 실제 접근 가능 지역을 고려하는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공원 입지를 적절히 선정해야 하며,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이 공원 입지 결정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원의 존재성 인식을 위한 방법으로 공원 주변의 건축물의 고도규제, 공원경계 담장의 제거 및 생활타리 식재 등을 통해 개방성을 확보하고 공원의 시각적 접근성을 높여 공원의 존재를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 1. 전체 모집단의 인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의 경우 인구사회학적인 조사를 덧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는 집단간의 차이나 전체적인 집단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표본의 적정수를 추출하는 방법이다(변재상 외, 2004).
- 주 2. 도로는 공원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으나 도로에서의 많은 차량 통행과 이들의 빠른 속력으로의 통행은 대개 도보나 자전거 등의 무동력으로 공원으로 접근하게 되는 일상권 공원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한다.
- 주 3. 나머지 사례대상 도시별 유치권 분석도는 지면 관계상 일부만 게재함.
- 주 4. 나머지 사례대상 공원 접근성 분석 및 실제 파악된 공원이용자의 거주지역 표시도는 지면 관계상 일부만 게재함.

인용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2004) 도시공원의 접근성 및 주민친화성 향상 방안 연구.
2. 국토연구원(199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 박찬규, 주종원(1990) 도시근린공원의 이용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주민의 공원이용에 대한 잠재적 요구의 추정모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2): 213-225.
4. 반영운, 유한(1988) 도시근린공원의 적정입지 선정방법,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8(1): 243-246.

-
5. 임승빈, 최형석, 변재상(2004) 도시 이미지 분석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2(1): 47-56.
 6. 성현찬(1998) 경기도 도시공원의 시민접근성 비교와 향상방안. 경기연구 3: 63-94.
 7. 손상탁, 윤병구(2002) 도시민의 공원녹지의식에 의거한 공원 녹지정책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7(4): 59-81.
 8. 안동만, 최형석, 김인호, 조형준(1991)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접근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8(4): 17-28.
 9. 오병태(1995) 광주시 도시공원의 이용과 공급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4): 1-21.
 10. 허미선, 진양교(1996) GIS를 활용한 서울시 도시근린공원의 접근성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3): 42-56.
 11. Chiesura, A.(2004) The role of urban parks for the sustainable city.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8: 129-138.

원 고 접 수: 2005년 4월 7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5년 6월 2일

3인익명 심사필